50. 전화국 영업업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불안, 우울증

성별 여 나이 46세 직종 영업직 업무관련성 높음

- 1. 개요: 근로자 김○○은 1984.11.13-2003.11.30까지 전화국에서 수납, 회계, 전송기술 지원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중 신경정신과에서 불안 및 우울신경증으로 진단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우측청신경초종으로 진단받아 우측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4년11월 입사하여 2003년 11월까지 19년 1개월간 전화국 수 납업무(2년 8개월), 회계업무(4년 2개월), 영업민원업무(10개월), 선로소통관리업무(1년 6 개월), 수요조사업무(11개월), 중계전송운용업무(2년 11개월), 영업상품 판매업무(5년 9개월)를 하였다. 2003년 6월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노사간의 말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씌운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 회사에서 상사 및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또 2003년 8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으로 15년 이상 근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강요가 있었는데 상기근로자는 근속년수가 비슷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감원압력을 받았다. 또한 상급자가 상기 근로자의 업무활동을 감시하는 일이 있어 면담시 이를 항의하고 업무일지에 이 내용을 기술하였다고 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2003년 12월부터 시장관리2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상품판매전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퇴출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부서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3. 의학적 소견: 생후 3개월만에 군에 근무중이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농협을 다니면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경제능력이 없고 술, 노름으로 소일하는 한정치산자이어서 본인의 수입으로 결혼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홀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상기 근로자가 2년간 간호하다가 돌아가셨다. 배우자와 35세때인 1994년에 이혼하고 현재 아들 2명과 생활하고 있다. 정신질환의 가족력은 없다.
- 4. 결론: 근로자 김〇〇의 불안장애, 우울증, 청신경종양은
- ① 청신경종양, 우울증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청신경종양의 원인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고,
- ③ 1984년 입사 당시 건강하였고 특별한 정신과적 과거력이 없으며,
- ④ 2003년 6월말 이후 상기 근로자가 업무관련 사건으로 인한 우울삽화가 있으면서 본인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내 조기퇴직에 대한 압력, 상급자와 관계 갈등 등으로 인하여 불안감, 우울증상이 지속됨으로써 우울증이 촉발하여,

근로자 김○○의 불안장애, 우울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